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7 선고 2019가단4563(본소), 2019가단214063(반소) 판결  
[제3자의 ·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개명전: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8. 17.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2018. 12. 12.자 대물변제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730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2. 28.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18. 12. 12. 대물변제합의를 취소한다.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은 2014. 10. 23. F에게 8억 원을 2019.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D은 E의 위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E과 D은 2014. 10. 23. F에게 E이 2014. 10. 23. 차용한 8억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2019. 10. 31.까지 변제하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과 전기 지게차 1.8톤 1대, 1톤 트럭 3대, 스타렉스 차량 2대, 모닝 차량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F에게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 E을 주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D에게 주방용품 생산에 사용되는 환절판 110,454,825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D은 2017. 12. 22.까지 피고에게 납품대금 중 9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남은 20,454,8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D은 2018. 7. 16. 원고에게 D이 2017. 7. 16.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18. 7. 17.까지 변제하되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D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 D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D이 2018. 7. 17.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8. 6.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G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2018. 8. 30.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2. 9.경부터 2019. 4.경까지 D과 물품거래를 해왔는데, H이 2019. 4.까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76,994,511원에 이르렀다. D은 2018. 12. 12. H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중 3,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D은 당분간 이 사건 각 동산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7308호로 위와 같이 못 받은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4. 발령한 지급명령은 2019.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을 집행권원으로 이 법원 I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730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2. 28.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D은 원고와 사이에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1차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2차 양도담보설정계약과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는 효력이 없다.

예비적으로,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의 효력

####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이 사건 1차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F에 대한 8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D이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인 D이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D은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F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이에 D이 다시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를 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가 유효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반소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4.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의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 물건목록

| No | 물건명          | 제조사 | 연식     | 모델    | 수량     | 비고 |
|----|--------------|-----|--------|-------|--------|----|
| 1  | 유압샙머신        |     | 1993 년 |       | 1      |    |
| 2  | 연마기          |     |        |       | 1      |    |
| 3  | 라온당컷팅기       |     | 2011 년 |       | 1      |    |
| 4  | 자동시마기        |     | 2010 년 |       | 1      |    |
| 5  | 자동알곤 직선용접기   |     | 2007 년 |       | 1      |    |
| 6  | 자동알곤 직선용접기   |     | 2012 년 |       | 1      |    |
| 7  | 자동알곤 곡면용접기   |     | 2011 년 |       | 1      |    |
| 8  | 자동시무용접기      |     | 2004 년 |       | 1      |    |
| 9  | 파워프레스(다이어우선) |     |        | 7 톤   | 1      |    |
| 10 | 파워프레스        |     |        | 5 톤   | 1      |    |
| 11 | 파워프레스        |     |        | 5 톤   | 1      |    |
| 12 | 파워프레스        |     |        | 3 톤   | 1      |    |
| 13 | 자동선반형 미각기    |     | 2005 년 |       | 1      |    |
| 14 | 자동회전형 미각기    |     | 2005 년 |       | 1      |    |
| 15 | 전기지게차        |     | 2006 년 | 1.8 톤 | 1      |    |
| 16 | 자동해라시보리      |     |        |       | 4대     |    |
| 17 | 자동연마기        |     |        |       | 2대     |    |
| 18 | 유압금형         |     |        |       | 40 세트  |    |
| 19 | 프레스금형        |     |        |       | 100 세트 |    |
| 20 | 해라금형         |     |        |       | 150 세트 |    |

